[사 건 명] 행심 2019-128호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6. 19.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재결이유]

Ⅰ.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수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다른 공공기관에 접수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송하도록 하였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존재하지 않는 학교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우리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관되도록 하였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있기에 정보공개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청구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2. 판 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을 알면서도, 다른 공공기관에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송을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이송되었다고 하나, 이 정보보유기관인 피청구인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으로, 잘못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제2조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Ⅳ.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